

95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 명단안

연번	성명	생년월일	주 소	현 직	주 요 경 력	비 고
1	한수균	60.10.15.	마포구 중동 36-30 연립 114동 4호	시민보건의위원회 위원		
2	이연호	58. 7.13.	마포구 성산동 450 시영APT 7-1303	삼덕회계법인재직	삼일회계법인근무	
3	염찬엽	62. 1. 5.	마포구 성산동 450 시영APT 25-110	한솔 세무회계 사무소 운영	안권회계법인근무 안진회계법인근무 신한회계법인근무	
4	김광만	59. 9. 7.	마포구 대흥동 325 -78	김광만세무회계 사무소 운영	안진회계법인근무	94회계년도마포 구결산검사위원 역임
5	이병소	62. 1. 3.	마포구 용강동 39- 1 우석연립 A-101	이병소세무회계 사무소 운영	산동회계법인근무 안전·세화회계 법인근무	94회계년도마포 구결산검사위원 역임

서울특별시마포구정신문발행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1996. 5. 11.
총무재무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6년 5월 2일
마포구청장 제출
- 나. 회부일자 : 1996년 5월 3일
- 다. 상정일자 : 제38회의회(임시회) 제1차위원
회(96.5.11.) 상정, 질의토론,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문화공보실장 조성대

가. 제출이유

구정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나아가 구정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발간하는 구정신문을 효율적으로 발간하고자 구민이 직접 참여하는 편집위원과 객원기자·모니터요원을 위촉 홍보물 제작에 참여토록 하고 유료광고를 게재함으로써 세외수입 증대에 일부나마 기여코자 함.

나. 주요골자

- 신문의 제호를 "내고장 마포"라고 함.
- 신문 발행인은 마포구청장으로 하고 월 1회 매월 1일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신문의 게재내용은 구정·의정소식, 교

양, 문화 등으로 한다는 기준을 정함
-신문에 무료 또는 유료광고를 게재할 수 있도록 하고 유료광고료의 기준등을 정함.

-공무원이 아닌 편집위원 및 객원기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신문의 기사 또는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는 원고료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 박관수)

○동 제정조례안은 관에서 일방적으로 자체업무 홍보만을 게재하여 발행하던 반상회보 등을 폐지하고 구민중에서 편집위원과 객원기자 및 모니터요원 등을 위촉하여 신문제작에 직접 참여토록 함으로써 구정신문을 효율적으로 발간하고 나아가 구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유료광고를 게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소나마 세원확충에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동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사료되나

○안 제7조에 편집위원회의 구성요건은 규정되어 있으나,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등이 규정되지 않아 조례의 실제적인 내용이 누락되어 이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안 제11조에 객원기자에게도 예산의 범

위내에서 수당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은 되어 있으나 객원기자의 정원 범위가 동조례안에 명시되지 않아 지방 재정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편성 시 경비 산출범위가 애매하여 문제점으로 지적할 소지가 있는 바 정원범위를 정하는 것이 신문편집활동의 다양한 의견수집을 제한할 수 있는 소지도 있다고 생각되므로 객원기자의 정원을 제한하지 말고 수당지급 기준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던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문요지(유남렬위원) : 내년도 예산은 어느 정도 예상하는가?
- 답변요지(조성대 문화공보실장) : 8만부 발간시 약 1억 5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질문요지(이인구위원) : 조례안중 발간횟수 및 일자 는 일률적으로 지정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 답변요지(조성대 문화공보실장) : 극히 예외적으로 운영할 계획임.

- 5. 토론요지 : 없음
- 6. 심사결과 : 수정안가결
-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 8. 기타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마포구정신문발행에관한조례(안)에 대한수정(안)

제안년월일 : 1996. 5. 11.
제안자 : 총무재무위원장

- 1. 수정이유
- 제정조례안으로 조례의 실제적 내용이 누락되어 일부 보완하고, 불필요한 내용을 정비코자 함.
- 2. 수정주요골자
 - “발행일등”에서 불필요한 단서규정을 삭제함.(안제4조)
 - “편집위원회의 기능”을 신설함.(안제8조)
 - “수당등”에서 객원기자에 대한 단서규정을 신설함.(안제12조)

서울특별시마포구정신문발행에관한조례(안)에 대한수정(안)

서울특별시마포구정신문발행에관한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 단서를 삭제한다.

안 제8조 내지 제10조를 제9조 내지 제11조로 하고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편집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관한 사항을 조정·심의한다.

- 1. 신문계재 내용의 기획·조정
- 2. 신문편집 조정
- 3. 기사 내용의 교정
- 4. 공익광고등 무료광고 해당 여부 및 광고내용 또는 광고 게재 여부
- 5. 기타 신문발행에 필요한 사항

안 제11조를 제12조로 하고 동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객원기자에 대해서는 원고가 채택되어 신문에 게재되었을 경우에 한해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안 제12조 내지 제13조를 제13조 내지 제14조로 한다.

(다음 페이지에 계속)

수 정 안 대 비 표

원 안	수 정 안
<p>제4조(발행일등) 신문은 월 1회 매월 1일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발간 횟수 또는 발행일을 변경할 수 있다. (신설)</p>	<p>제4조(발행일등) (단서규정 삭제)</p>
<p>제8조(간사등) (생략)</p>	<p>제8조(편집위원회의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관한 사항을 조정·심의한다. 1. 신문게재 내용의 기획·조정 2. 신문 편집 조정 3. 기사내용의 교정 4. 공익광고등 무료광고 해당여부 및 광고내용 또는 광고 게재 여부 5. 기타 신문발행에 필요한 사항</p>
<p>제9조(직원기자등 위촉·운영) (생략)</p>	<p>제9조(간사등) (원안 제8조와 같음)</p>
<p>①~③ (생략)</p>	<p>제10조(직원기자등 위촉·운영) (원안 제9조와 같음)</p>
<p>제10조(광고의 게재등) (생략)</p>	<p>①~③ (원안과 같음)</p>
<p>①~⑥ (생략)</p>	<p>제11조(광고의 게재등) (원안 제10조와 같음)</p>
<p>제11조(수당등) (생략)</p>	<p>①~⑥ (원안과 같음)</p>
<p>①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직원기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등을 지급할 수 있다(추가신설)</p>	<p>제12조(수당등) (원안 제11조와 같음)</p>
<p>②~③ (생략)</p>	<p>①단 직원기자에 대해서는 원고가 채택되어 신문에 게재 되었을 경우에 한해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p>
<p>제12조(발행부수및배부) (생략)</p>	<p>②~③ (원안과 같음)</p>
<p>제13조(시행규칙) (생략)</p>	<p>제12조(발행부수및배부) (원안제12조와 같음)</p>
	<p>제13조(시행규칙) (원안제13조와 같음)</p>

서울특별시마포구정신문발행에관한조례(안)

의안 번호	78
----------	----

제출년월일 : 1996.5.2.

제 출 자 : 마포구청장

1. 제정이유

구정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나아가 구정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발간하는 구정신문을 효율적으로 발간하고자 구민이 직접 참여하는 편집위원회와 객원기자·모니터요원을 위촉 홍보물 제작에 참여토록 하고 유료광고를 게재함으로써 세외수입 증대에 일부나마 기여코자 함.

2. 주요골자

○신문의 제호를 “내고장 마포”라고 함. (안 제2조)

○신문의 발행인은 구청장으로 하고, 월 1회 매월 1일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안 제3조 및 제4조)

○신문의 게재내용은 구정·의정소식, 교양, 문화 등으로 한다는 기준을 정함 (안 제6조)

○신문 발행을 위한 편집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신문 편집에 필요한 자료 수집등을 위한 객원기자 및 모니터요원의 위촉, 운영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9조)

○신문에 무료 또는 유료광고를 게재할 수 있도록 하고 유료광고료의 기준등을 정함(안 제10조)

○공무원이 아닌 편집위원 및 객원기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신문의 기사 또는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는 원고료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3. 조례(안) : 별첨

4. 관계법령

○지방자치법(1995.12.29. 법률 제5069호) 제15조

5. 예산조치 : 필요

서울특별시마포구정신문발행에관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마포구정을 구민에게 알려 구민의 알 권리 충족

및 지역사회 발전에 적극 동참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구정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서울특별시마포구정신문(이하 “신문”이라 한다)을 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호) 신문의 제호는 “내고장 마포”로 한다.

제3조(발행인) 신문의 발행인은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발행일등) 신문은 월 1회, 매월 1일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발간횟수 또는 발행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5조(주관) 신문의 발간·보급등에 관한 사항은 문화공보실장이 주관한다.

제6조(게재내용) 신문 게재내용은 구정·의정소식, 교양, 문화등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 밝고 건전한 사회기풍을 진작시킬 수 있는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

제7조(편집위원회 구성등) ①신문의 편집을 위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정홍보지 「내고장 마포」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4인이상 8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문화공보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신문사 또는 출판사 등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자
2. 신문 발행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서울특별시마포구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컬시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⑤위원회의 의결 방법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간사등)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위원회의 간사는 공보계장으로 하고, 서

기는 업무 담당자로 한다.

③간사 및 서기는 회의록등을 작성하고 회의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직원기자등 위촉·운영) ①구청장은 신문의 편집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등을 위하여 직원기자 및 모니터요원을 위촉 또는 임명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직원기자는 구민중에서 위촉하고 모니터요원은 구민 또는 공무원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③직원기자 및 모니터요원의 위촉 또는 임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광고의 게재등) ①신문에 무료 또는 유료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②위원회에서 공익에 부합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광고는 필요한 경우 무료게재를 할 수 있다.

③유료광고의 광고료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④광고료를 기한내에 완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납된 금액에 대하여 완납시까지 규칙으로 정하는 연 15퍼센트이하의 연체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⑤광고료의 수입은 서울특별시마포구 일반회계 세외수입으로 한다.

⑥유료광고에 관한 운영방법, 계약 및 광고료 수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수당등) ①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직원기자에 대하여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신문의 기사 또는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료등 실비의 보상을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등 지급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발행부수 및 배부) 신문의 발행부수, 배부처, 배부수량, 배부방법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촉된 편집위원과 직원기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별표)

광고료 산정기준

(단위 : 원)

구 분	면 별	규격(1단 : 3.3cm)	금 액	면별기준요금(단가)
후 백	1면	3단×23cm	1,242,000	18,000
	2-3, 8면	3단×23cm	1,138,500	16,500
	기타(4-7면)	3단×23cm	1,035,000	15,000
칼 라	1면	3단×23cm	1,614,600	23,400
	2-3, 8면	3단×23cm	1,480,050	21,450
	기타(4-7면)	3단×23cm	1,345,500	19,500
돌출후백(고정)	1면	6cm×6cm	453,600	12,600
	2-3, 8면	6cm×6cm	415,800	11,550
	기타(4-7면)	6cm×6cm	378,000	10,500
돌출칼라(고정)	1면	6cm×6cm	589,680	16,380
	2-3, 8면	6cm×6cm	540,540	15,015
	기타(4-7면)	6cm×6cm	491,400	13,650

【비고】 (1) 12면이상 발행시에 마지막면은 위 구분란의 해당 8면 가격을 적용하여 마지막면의 2번째 앞면까지는 위 구분란의 해당 2, 3면의 가격에 1할을 할인한 가격을 적용하며, 나머지는 기타면의 가격을 적용한다.

(2) 3개월이상 장기 계약시의 광고료는 위 기준에 불구하고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할인할 수 있다.